

1/4분기 의료기기 표시·광고 위반사례

연번	품목명	위반내용	처분내용
1	레이저수술기	의료기기 '레이저수술기'를 광고함에 있어 홍보물(카다로그)에 허가 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Indication 확장·모공, 트살, 흉터, 목주름, 여드름 등"으로 거짓·과대광고함.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 4월
2	의료용물질생성기	의료기기 '의료용물질생성기'를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함에 있어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함.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 4월
3	개인용적외선조사기	의료기기 '개인용적외선조사기'를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함에 있어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함.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 4월
4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의료기기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를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함에 있어 광고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하고, 수입·판매하면서 홍보 목적으로 「사용 전·후 및 타사제품과 비교사진」을 게재한 브로셔(Brochure)를 제작·배포함.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 4월15일
5	의료용실리콘재료	의료기기 '의료용실리콘재료'를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함에 있어 품목 허가받지 않은 모델명(형명)을 게시함.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 4월
6	유발성응답용자극기	의료기기 '유발성응답용자극기'를 자사 홈페이지 및 인터넷사이트에 광고함에 있어 "난청발생의 지연, 예방, 개선, 이명의 완화 등"의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과대 광고함.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 4월
7	의료용물질생성기	의료기기 '의료용물질생성기'를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함에 있어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함.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 4월
8	의료용조합자극기	의료기기 '의료용조합자극기'를 광고함에 있어 자사 홈페이지 및 홍보물(카다로그)에 허가받은 사용목적과 다르게 "부분비만 및 피부재생관리에 탁월한 효과, 혈액순환/림프순환 촉진 및 피부의 탄력성 증가"로 거짓·과대광고함.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 4월
9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	의료기기 '매일착용소프트콘택트렌즈'에 대하여 의료기기법 제19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일부(제조업자의 상호와 주소, 제품명, 형명 등)를 기재하지 아니하고 판매함.	당해품목 판매업무정지 1월
10	소프트콘택트렌즈	의료기기 '소프트콘택트렌즈'를 자사 홈페이지에 광고함에 있어 광고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광고함.	당해품목 광고업무정지 4월